

2025년 벤처·로컬 창업 인턴스쿨 사업 공고

도내 예비 창업자 대상 전문교육을 운영하는 '벤처·로컬 창업 인턴스쿨 사업'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대학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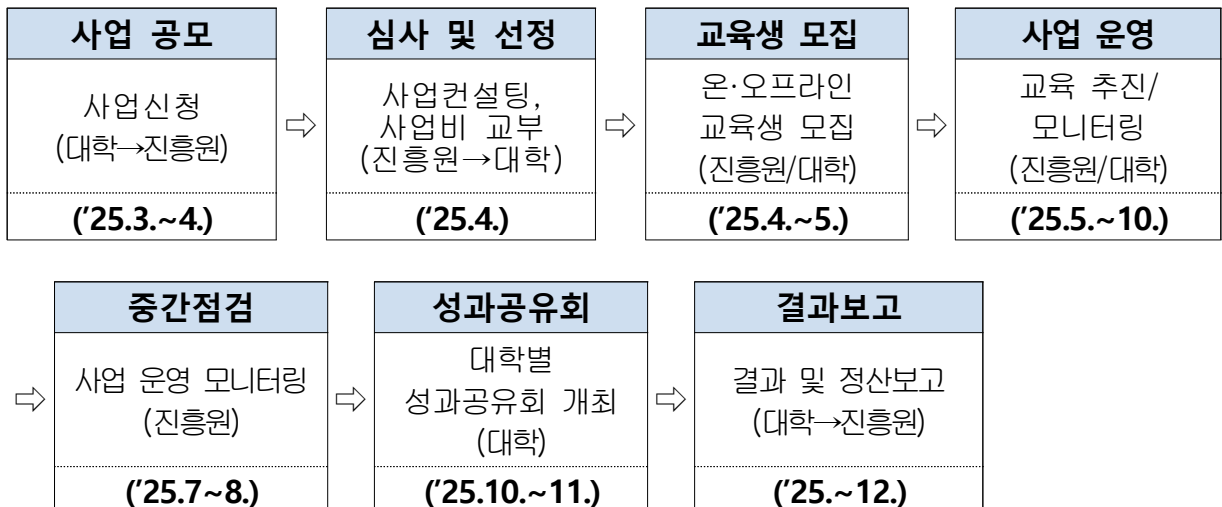
2025년 3월 26일

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

1. 사업개요

- (사업기간) '25. 5. ~ 11.(7개월)
- (추진방법) 도내 대학 대상 공모
- (총사업비) 100백만원
- (주요내용) 벤처·로컬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 대상 전문교육
 - (기초교육) 조직, 재무, 인력 등 창업을 위한 행정·재정적 교육
 - (심화교육) 분야별 사업 전략 설계 및 창업 역량 강화 교육
 - (컨설팅) 창업을 위한 지속적인 컨설팅 지원

※ 컨설팅은 전남창업지원종합플랫폼(무료 3회 컨설팅) 연계 추진
- (추진절차)



2. 대상 및 내용

- (사업대상) 창업 교육 운영 실적이 있는 도내 대학(창업지원단 등)
- (선정규모) 2개소 내외
- (지원사항) 개소별 50백만원 내외
 - ※ 신청규모,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선정 규모 및 지원금 조정 가능
- (사업내용) 벤처·로컬 예비창업자 대상 전문교육 운영
- (사업 필수 요건)

구 분	필 수 요 건	비 고
대상/인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교육대상 : 벤처·로컬 예비 창업자 ※ 19세 이상 도내 거주자, 벤처 분야 우선 선발 - 교육인원 : 개소별 50명 내외 	
교육과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초교육 : 조직, 재무, 인력 등 행정 재정적 교육 5차시(5시간 이상), 집합·온라인 병행 등 - 심화교육 : 분야별 사업 전략 설계 및 역량 강화 캠프(16시간 이상) 	
성과도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성과공유회 개최 - 창업 아이템 발굴(사업계획서 작성 등) - 사업자등록 등 	

3. 신청 및 접수

- (접수기간) '25. 4. 23.(수)까지
- (접수방법) 공문 접수 ※ 수신처 : (재)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
- (제출서류) 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 [붙임 참조]

4. 심사 및 선정

○ (심사방법) 서류심사 ※ 필요 시 발표심사

○ (심사기준)

(단위 : 점)

순서	심사항목	심사기준	합계
합 계			100
1	기관의 전문성	유사 교육 추진 실적 및 교육 내용의 전문성	30
2	계획의 적합성	사업 목적 대비 계획의 적합성 및 실현가능성	30
3	예산의 효율성	편성된 예산의 효율성 및 적합성	20
4	성과의 효과성	사업 수행의 정량적 및 정성적 성과	20

○ (선정기준) 심사위원별 심사결과 평균점수 고득점 순으로 선정

- 평균점수가 동점일 경우 심사항목 순서별 평균점수 고득점 순 선정
- 평균점수 70점 미만일 경우 선정규모에 포함되더라도 탈락 처리

○ (최종발표) '25. 4월 중, 인평원 누리집

5. 기타 유의 사항

- 일정, 심사 등 본 공고는 진흥원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, 변경 사항은 진흥원 누리집에 재공고됨
- 심사 시작 전 서면 철회 요청, 수정사업계획서 미제출은 사업 포기로 간주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
- 신청 접수 결과가 선정 규모보다 적을 경우 재공고하여 사업 대상을 선정할 수 있음
- 진흥원은 심사 전 신청기관에 추가 자료 요청을 할 수 있으며, 제출된 자료는 신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
- 심사 결과 적합 대상이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으며, 재공고 하거나 취소할 수 있음
- 서류의 허위 기재, 착오, 누락, 변조, 위조 등 발견 시 선정 취소될 수 있음

- 제출된 서류는 사업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, 내용의 평가 및 사업 선정 세부 사항은 공개되지 않음
- 아래 사유에 해당 시, 사업비를 회수하고 선발을 취소함

사업 중단 및 환수

- 사업 목적과 관련 없는 항목이나 집행 불가 항목에 예산을 사용한 경우
- 운영계획서에 따른 사업 추진 실적이 부진한 경우
- 기타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
-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허위 사실이 밝혀진 경우
- 제출한 사업 계획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지원조건,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경우
-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
-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중단하거나 지연하여 사업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

- 최종 사업 선정 후 심사위원의 제안사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, 이에 불응 시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
- 보조금 교부 결정 공문 시행 전 집행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인정하지 않음
- 사업 중도 포기 시 진흥원의 절차에 따라 보조금 정산 및 환수 처리함
- 사업 중도 포기 등은 향후 진흥원 사업에 참여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
- 진흥원은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, 허위 내용 확인 시 사업 취소 및 보조금 환수 처리함
-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·형사상 책임 및 제반비용은 해당 기관에서 부담
- 선정 기관은 진흥원이 주관하는 담당자 회의, 중간보고, 성과 공유회, 만족도 조사, 모니터링에 적극 협조해야 함
- 공고 내용, 지침서 등의 사항이 없는 경우, 진흥원의 검토 및 해석에 따름

사업 제외 대상

- 동일(유사)사업으로 국가, 타 지자체, 공공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경우
- 단순 친목이나 일회성(소모성) 행사, 영리 목적의 모임 또는 활동
- 경상적 경비(일반운영비, 여비, 식비, 사무실 임차료 등)가 주된 사업
-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을 지지하는 모임 또는 사업의 경우
-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
- 기타 심사위원회에서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사업